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

2016년 양육비 이행 선진 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

2016. 6. 3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목 차

Ⅰ. 연수개요 ····· 3

1. 연수목적 ····· 3
2. 연수개요 ····· 3
3. 주요일정 ····· 4
4. 방문기관 ····· 5

Ⅱ. 뉴질랜드 ····· 14

1.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제도 ····· 14
2. 뉴질랜드 기관 방문 활동 ····· 21

Ⅲ. 호주 ····· 30

1. 호주의 양육비 이행제도 ····· 30
2. 호주 기관 방문 활동 ····· 42

Ⅳ. 뉴질랜드 · 호주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60

1. 제도의 특징 ····· 60
2. 제도의 시사점 ····· 62

Ⅰ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뉴질랜드·호주의 체계적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개선안 검토

□ 뉴질랜드·호주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수단 벤치마킹 및 양육비 징수권한을 결정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기관간의 협력체계 조사

2. 연수 개요

□ 기 간 : 2016. 5. 25.(수) ~ 6. 3.(금) (8박 10일)

□ 국 가 : 뉴질랜드(오클랜드, 웰링턴), 호주(시드니, 캔버라)

□ 연수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이00 외 4인

□ 방문 기관

국 가	방 문 기 관	면 담 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한인변호사협회	최유진(Choi Eugenie) 한인변호사협회 변호사 외 3인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이준영(Joon Yi) 국세청 법무팀 변호사 외 2인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 및 지역법원(Wellington High Court and District Court)	고등법원 직원(Jane Penney) 외 1인 지역법원 판사(Judge Johnston) 외 4인
호주	호주 한인변호사협회	홍경일(Ken Hong) 전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외 3인
	호주 양육비이행기관 (CSA,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양육비이행기관 국가 정책담당과장(Ms Amanda Cenin) 및 장관·의회실장(Peta Mudge) 등 5인
	호주 복지부 (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복지부 차관(Ms Serena Wilson), 대외협력실장(Lauren Nelson)외 2인
	호주 가정법원 (the Parramatta Registry of the Family Court of Australia)	가정법원 판사(Garry Fostrer) 및 지부장(Poul Le Large) 외 4인
	호주 면접교섭 서비스 센터 (Penrith Children's Contact Service)	면접교섭센터장(Jennifer Moran) 및 3인

3.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제1일 5. 25.(수)	인천	인천국제공항 출발(KE129)
제2일 5. 26.(목)	뉴질랜드(오클랜드)	뉴질랜드(오클랜드) 도착
		뉴질랜드 한인변호사협회 면담
		뉴질랜드 국세청(IRD) 법무팀 면담
		뉴질랜드(웰링턴) 이동(NZ461)
제3일 5. 27.(금)	뉴질랜드(웰링턴)	웰링턴 고등 법원(Wellington High Court) 방문
		웰링턴 지역(가정) 법원(Wellington District Court) 오찬
제4일 5. 28.(토)	뉴질랜드(웰링턴)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웰링턴) 출발(QF164) 호주 시드니 도착
제5일 5. 29.(일)	호주(시드니) 호주(캔버라)	호주 한인변호사회 오찬
		호주(시드니) 출발(QF1495) 호주(캔버라) 도착
제6일 5. 30.(월)	호주(캔버라)	호주 양육비이행기관(CSA,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 면담
제7일 5. 31.(화)	호주(캔버라) 호주(시드니)	호주 복지부(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면담
		호주(캔버라) 출발(QF1522) 호주(시드니) 도착
제8일 6. 1.(수)	호주(시드니)	호주 시드니 문화시찰
제9일 6. 2.(목)	호주(시드니)	호주 가정법원(the Parramatta Registry of the Family Court of Australia) 면담
		호주 면접교섭 서비스 센터 면담 (Relationship Australia, Penrith Children's Contact Service Centre)
제10일 6. 3.(금)	호주(시드니) 인천	호주 시드니 출발(KE122) 인천 국체공항 도착

4. 방문 기관

방문기관 1	뉴질랜드 한인변호사협회
방문목적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사전 조사 및 협조 요청
방문일시	2016. 5. 26.(목), 11:00 ~ 12:00
면담자	최유진(Eugenie Choi) 변호사 (Hemaru Law Limited Trust Account) 남영수(Youngsoo Nam) 변호사 (YSN Lawyers) 이유선(Christina Lee) 변호사 (Glaister Ennor) 이창민(Chang Min Lee) 변호사 (Hemaru Law Limited Trust Account)
기관개요	오클랜드의 한인변호사들로 구성 된 협회
주 소	20 Link Drive, Wairau Valley, Auckland (Hemaru Law Limited Trust Account)
사진	

방문기관 2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방문목적	국세청이 주관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이해
방문일시	2016. 5. 26.(목), 13:00 ~ 17:00
면담자	이준영(Joon Yi) (Solicitor, Legal & Technical Service, Inland Revenue) Ben Chin (Solicitor, Legal & Technical Service, Inland Revenue) Fran Morrison (Technical and Service Advisor, Assistance-Families)
기관개요	뉴질랜드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주 소	5-7 Byron Avenue, Takapuna, Auckland
사진	

방문기관 3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

방문목적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법원의 역할과 기능 이해
방문일시	2016. 5. 27.(금), 10:00 ~ 12:00
면담자	Jane Penney (Court Manager and Registrar, High Court of New Zealand)
기관개요	뉴질랜드 웰링턴에 위치한 고등법원
주 소	2 Molesworth Street, Wellington
사진	

방문기관 4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가정)법원

방문목적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법원의 역할과 기능 이해
방문일시	2016. 5. 27.(금), 13:00 ~ 17:00
면담자	June Johnston (Judge, Wellington District Court) Tony Walsh (Judge, Wellington District Court) Pat Grace (Judge, Wellington District Court) John Delany (Barrister(local lawyer), Terrace Chambers) Roz Fraser (Court Manager, Wellington District Court)
기관개요	뉴질랜드 웰링턴에 위치한 지역(가정)법원으로, 지역법원 내에 가정법원이 있는 형태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사건 다룸
주 소	43-49 Ballance Street, Wellington
사진	

방문기관 5	호주 한인변호사협회

방문목적	호주의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사전 조사 및 협조 요청
방문일시	2016. 5. 29.(일), 12:00 ~ 13:00
면담자	홍경일(Ken Hong) 변호사 (Hayashi & Hong) 한지희(Jenny Han) 변호사 (Hayashi & Hong) 이현주(Hyunjoo Lee) [조정전문가,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 (호주 연방 인권위원회)] Richard Lee (Barrister, Wentworth Chambers)
기관개요	호주 시드니의 한인변호사로 구성된 협회
주 소	1-7 Albion Pl, Sydney
사진	

방문기관 6	호주 양육비이행기관(Child Support Agency)

방문목적	호주의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조사 및 연구 실시
방문일시	2016. 5. 30.(월), 14:00 ~ 17:00
면담자	Mr George Thiveos (General Manager, Families Division) Ms Amanda Cenin (National Manager, Families and Child Support Policy Branch) Mr Bruce Young (National Manager, Child Support Smart Centres) Ms Peta Mudge (Assistant Director, Ministerial Coordination and Parliamentary Branch) Ms Lauren Moorhouse (International Delegations Officer, Ministerial Coordination and Parliamentary Branch)
기관개요	호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DHS) 내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기관
주 소	the Caroline Chisholm Centre, Canberra 57 Athllon Drive, Greenway, ACT 2900
사진	

방문기관 7	호주 사회부(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방문목적	호주의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조사 및 연구 실시
방문일시	2016. 5. 31.(화), 8:30 ~ 11:30
면담자	Cath Halbert (Group Manager, Payment Policy Group) Ty Emerson (Branch Manager, Family Payment and Child Support Policy) Lauren Nelson (International Relations, DSS Policy Office) Chris Bowen (International Relations, DSS Policy Office)
기관개요	호주의 복지부(DHS)와 함께 양육비 이행지원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주 소	Tuggeranong Office Park, Soward Way (Athllon Drive), Greenway ACT 2900
사진	

방문기관 8	호주 가정법원(Family Court of Australia)

방문목적	호주의 양육비 이행절차에 있어 법원의 역할과 기능 조사
방문일시	2016. 6. 2.(목), 9:30 ~ 12:30
면담자	Garry Foster (Justice, Family Court of Australia) Hilary Hannam (Justice, Family Court of Australia) Sally Cole (Solicitor, Legal Aid New South Wales) Jim McCulloch (Solicitor, Legal Aid New South Wales) Poul Le Large (Registry Manager Parramatta & Dubbo) Mark Palmer (Sernior Family Consultant)
기관개요	호주 파라마타(Parramatta) 지역에 위치한 가정법원
주 소	Garfield Barwick Building, Commonwealth Law Courts, Parramatta
사진	

방문기관 9	호주 면접교섭센터(Relationship Australia)

방문목적	호주의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방문일시	2016. 6. 2.(목), 14:00 ~ 17:00
면담자	Jennifer Moran (Regional Manager, Penrith Centre) David Roberts (Senior Manager, Post Separation Service) Helen McQuinn (Senior Manager, Post Separation Service)
기관개요	호주 펜리스(Penrith) 지역에 위치한 면접교섭센터로, 이혼가정에 대한 상담 및 중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함
주 소	Level 2/ 606 high street, Penrith
사진	

Ⅱ 뉴질랜드(New Zealand)

1.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제도

1 제도 개요

○ 뉴질랜드에서는 1991년 「자녀양육비법(Child Support Act 1991)」에 기초하여 1992년부터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에서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국세청(IRD)은 자녀양육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양육비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모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관할하고 있음

○ 국세청(IRD)이 양육비 이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비율을 높이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여 양육비 이행지원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양육비 산정식이 법원에서 제공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국세청(IRD)에서 양육비 산정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개인이 직접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2 국세청(IRD)의 기능과 역할

(1) 조직

가) 기관의 역할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 근거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정하고 징수하여 양육자에게 전달하며, 양육비의 재산정 및 면제 등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이행

○ 법원의 자녀양육비 조정판결에 대한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

○ 양육비 징수에 있어서 연체료, 임금으로부터 직접 징수 등을 포함한 강제적 법적 권한 행사 가능

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 (법 원) 이혼 부모가 자녀양육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할 경우, 혹은 자녀 양육비 산정 문제를 국세청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이 양육비 조정을 담당하게 됨

○ (사회부, Work and Income)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가사수당(DPB, domestic purpose benefit) 정보를 국세청과 연계하여 양육비 징수 및 이체 과정에 활용

○ (관세청) 관세청의 출입국 정보 매칭(matching) 서비스를 통하여 출입국 정보를 공유

* 해외 거주 부모가 뉴질랜드의 자녀 양육비 미지급 및 법칙금(penalty)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큼

* 출입국 정보 매칭 서비스를 통해, 2010년 중반까지 약 7,700만 달러의 양육비 이행 확보

다) 2015년도 주요 통계

○ 양육비 징수 및 전달

- 양육비 채무자 174,000명으로부터 징수한 양육비는 약 463백만 달러($463 million)이며, 이 중 265백만 달러($265 million)를 양육 부모에게 전달함

○ 미지급 양육비(child support debt) 현황

- 미지급 양육비는 약 33억 달러($3.3 billion)이며, 이 중 범칙금(penalty)이 79%에 달함(약 26억 달러, $2.6 billio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지급 양육비(Debt)	$1.990	$2.335	$2.452	$2.781	$3.047	**$3.276**
범칙금(Penalties)	$1.430	$1.743	$1.818	$2.109	$2.372	**$2.605**

* 미지급 양육비 약 33억 달러 중, 호주에 살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가 약 827 백만 달러($827 million)이며, 호주와의 협약을 통해 호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로부터 받아 낸 양육비가 약 50.2백만 달러($50.2 million)에 달함

* 미지급 양육비 약 33억 달러 중, ①호주를 제외 한 타국(他國)에 살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는 총 약 778 백만 달러($778 million)이고, ②약 1,671 백만 달러는($1,671 million)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임

(2) 주요 업무

가) 자녀 양육비 산정 및 이행 절차

○ 양 부모가 자발적 합의에 도달한 경우

- 양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관련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자발적 합의내용을 국세청에 등록 하고, 국세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주고받음
- 양육비 관련 자발적 합의 내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주당 $10 이상 (연간 $520 이상) 양육비를 이행해야 함 .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혹은 뉴질랜드 시민에 해당하는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함

○ 국세청의 양육비 산정평가(Formula Assessment)

- 양 부모가 자발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 이혼한 부모 어떤 쪽이라도 양육비 산정평가(Formula Assessment)를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매년 이행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여 월별(月別) 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 및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보함

○법원이 양육비 판결을 내린 경우

-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양육비 조정신청을 낼 수 있음
- 판결문이 국세청에 전달되며, 국세청은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 및 전달하여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양육부모가 복지수당을 받을 경우

- 양육부모가 복지청(Work and Income)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가사수당인 DPB(Domestic Purpose Benefit)'을 받고 있는 경우, 국세청(IRD)에서 징수한 양육비는 국가로 귀속 됨
- 단, 국세청(IRD)에서 징수한 양육비가 가사수당(DPB)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양육부모에게 전달함

나)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 (1단계) 양 부모의 양육비산정소득(child support income)을 계산

※ 양육비산정소득(child support income) = 과세소득(taxable income) - 생계비(allowances) - 자녀지출비용(child expenditure)

○ (2단계) 양 부모의 양육비산정소득(child support income)을 합산

○ (3단계) 양 부모의 양육비산정소득(child support income)을 합산된 양육비산정소득으로 나누어 양 부모의 소득비율(income percentage) 계산

○ (4단계) 양 부모의 돌봄의 정도를 파악

○ (5단계) 양 부모의 평준화 된 돌봄의 비율(care percentage)을 계산

○ (6단계) 양부모의 '자녀양육비율(child support percentage)' 계산

※ 자녀양육비율(child support percentage) = 소득비율(income percentage) - 돌봄의 비율(care percentage)

구 분	결 정 사 항
ㄱ. 자녀양육비율이 (-)값이고, 돌봄의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양육비를 수령하게 됨
ㄴ. 자녀양육비율이 (+) 값이고, 돌봄의 비율이 65% 이하인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ㄷ. 자녀양육비율이 (0)이고, 돌봄의 비율이 28% 이하인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 (7단계) "자녀 양육비 지급 기준표(child expenditure table)"를 적용하여, 각 부모의 양육비 산정 합산 소득에 적용

○ (8단계) 자녀양육비율(child support percentage)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곱하여 최종 양육비 계산

※ 자녀양육비율(child support percentage)이 (+)값이거나, (0)의 값인 경우에 해당함

다) 자녀양육비 지급 면제

○ 한시적 양육비 면제

- 양육비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음

> . 양육비 채무자가 13주 이상 연속으로 '감옥'에 수감된 경우
> . 양육비 채무자가 13주 이상 연속을 '병원'에 입원한 경우
> . 양육비 채무자의 나이가 '16세 이하'인 경우

○ 영구적 양육비 면제

- 양육비 채무자가 성범죄 피해자이고, 그 자녀가 성범죄에 의해 태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限)하여 양육비를 영구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음

라) 양육비 지급 절차

○ 월별(月別) 양육비 지급

-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가 된 경우에는, 첫 양육비 지급일로부터 30일 전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짐

  ※ 인터넷 뱅킹(internet banking). 신용/체크카드(debit, credit card)로 이행이 가능

- 사전 통지 이후, 매월 2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 월급에서 차감

- 양육비 채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급여소득에서 양육비를 차감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세청(IRD)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급여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양육비의 정확한 금액과 시기 등을 사전 공지함

○ 복지수당에서 차감

- 양육비 채무자가 복지부(Work and Income)으로부터 받고 있는 「복지급여(benefit)」가 있는 경우, 국세청(IRD)은 복지급여로부터 양육비를 차감한 후 복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양육비 채무자는 (자신이)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IRD)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음

마)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 범칙금(penalties) 부과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일에 따른 범칙금(penalties)가 부과 됨

. 양육비 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5$ 또는 미지급 양육비의 2% 부과 . 양육비 지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에는 미지급 양육비의 8% 부과 . 양육비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될 때까지는 그 동안 부과된 범칙금과 미지급양육비의 2% 추가 부과 . 양육비 지급일로부터 12개월경과 후 부터는 그 동안 부과된 범칙금과 미지급양육비의 1% 추가 부과

○ 기타 강제 수단

- 「급여 및 연금」에서 양육비 압류 조치 (총 소득의 40%까지 압류 가능)
-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
-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신청
- 「출국 금지 조치」

(3) 주요 성과 관리

○ 양육비 산정평가(child support assessments) 처리율(%)

- 국세청(IRD)은 양육비 산정평가에 대한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평가 완료된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양육비 산정평가 방식이 2015년 4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산정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적기에 산정평가를 완료한 처리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체청(IRD)의 2015년 양육비 산정평가(child support assessments) 처리율은 82%로, 목표치인 80%에 비하여 2%p 초과 달성 함

○ 양육비 산정 결과에 대한 행정적 검토 요청 처리율(%)

- 국세청(IRD)은 양육비 산정결과에 대한 행정적 검토 요청에 대한 10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한 비율을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국세청(IRD)의 2015년 양육비 산정 결과에 대한 행정적 검토 요청 처리율(%)은 90.7%에 달하며, 목표치인 85%를 크게 상회 함

2 가정법원(family court)의 기능과 역할

(1) 조직

가) 기관의 역할

○ 뉴질랜드는 양육비의 산정 및 추심절차에 있어, 법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행정적인(administrative)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되어 있음

○ 양육비 관련 사건에 있어 법원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정법원은 꼭 필요한 가사사건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함

○ 뉴질랜드의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 다루는 가사사건 중 양육비와 관련된 사건은 극히 제한적임

- 국세청(IRD)의 양육비 산정평가(formula assessment)에 대하여 양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양육비 산정식(formula)을 개발하는 절차에 가정법원은 개입하지 않으며, 2015년 4월 1일 자(字)로 국세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양육비 산정식이 활용되고 있음
- 양육비 관련 추심은 국세청(IRD)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 (국세청) 국세청의 양육비 산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양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관련 판결을 요청하게 됨

※ 법원에서 양육비 관련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판결 내용이 국세청에 전달되며,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 및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고등법원) 양육비 관련 사건에 있어,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appeals)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짐

2. 뉴질랜드 기관 방문 활동

1 뉴질랜드 한인변호사협회 면담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5. 26.(목), 11:00 ~ 12:00

○ 면담자

- 최유진(Eugenie Choi) 변호사 (Hemaru Law Limited Trust Account)
- 남영수(Youngsoo Nam) 변호사 (YSN Lawyers)
- 이유선(Christina Lee) 변호사 (Glaister Ennor)
- 이창민(Chang Min Lee) 변호사 (Hemaru Law Limited Trust Account)

○ 장 소 : 20 Link Drive, Wairau Valley, Auckland (Hemaru Law Limited Trust Account)

□ 주요 질의·답변사항

<뉴질랜드의 양육비이행관리 기관 및 절차 흐름>

○ 뉴질랜드의 양육비이행관리 기관은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지

-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nand Revenue Department/약칭 IRD)」임
- 위 국세청은 사회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의 일부분인 「Work and Income(약칭 WIC)」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함
- WIC가 양육부모의 가사수당(Domestic Purpose Benefit/약칭 DPB, 양육비 포함) 신청에 의해 가사수당을 지급하면, WIC는 이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국세청이 양육비 추심활동을 개시함
- 그 후 비양육부모가 국세청으로부터 양육비 이행청구를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와는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함
- 또한, 국세청은 그 직원(변호사)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기소하여 최대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할 수 있음

<뉴질랜드의 양육비 산정방법>

○ 양육비 산정(Formula)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국세청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식(Formula)이 있으며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 단, 부모들은 IRD에 양육비 산정 신청을 생략하고 당사자들의 합의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음

<뉴질랜드의 면접교섭 방법>

○ 뉴질랜드의 면접교섭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 뉴질랜드의 면접교섭 형태는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한 달에 많게는 7일~14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며, 법원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수시로 면접하는 것을 허용함

○ 한국의 경우, 비양육부모는 자녀와 한 달에 1~2회 가량 한 회에 약 1일 정도 면접 교섭하는 편임

- 뉴질랜드 법원의 경우 비양육부모가 폭행, 음주,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있음
- 이는 '비록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자녀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자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을 통한) 보호자가 동행하여 그 자녀의 안전을 보호 함
- 한편, 뉴질랜드의 혼인형태는 대부분이 사실혼으로 동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혼인, 이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음

<뉴질랜드의 양육비 추심 방법>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어렵지 않게 추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세청이 비양육부모의 소득내용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신고를 적게 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세청의 추심을 면탈하려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소득신고를 적게 하는 등 세금탈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역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적다고 보아야 함

○ 만약, 비양육부모가 자력이 없어서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지
- WIC에서 국민들에게 가사수당(DPB)을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 자녀가 2~3명 있는 양육부모의 경우에는 고의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복지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음
- 만약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양육부모는 WIC에 양육비를 포함하는 가사수당(DPB)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고, WIC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이런 정보를 전달함
- 국세청에서 비양육부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비양육부모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 요청을 통보하게 되고, 비양육부모는 산정된 양육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한편, 국세청과 WIC의 양육비 이행과는 별개로 '만약 비양육부모 명의의 재산은 아니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나라의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하게 원상회복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②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면담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5. 26.(목), 13:00 ~ 17:00

○ 면담자
- 이준영(Joon Yi) (Solicitor, Legal & Technical Service, Inland Revenue)
- Ben Chin (Solicitor, Legal & Technical Service, Inland Revenue)
- Fran Morrison (Technical and Service Advisor, Assistance-Families)

○ 장 소 : 5-7 Byron Avenue, Takapuna, Auckland

□ **주요 질의·답변사항**

<뉴질랜드 국세청의 양육비 업무 전반>

○ 국세청(IRD) 내 양육비 업무의 전반적인 역할은 어떠한지

- 국세청 내 양육비 이행관리 예산은 정부의 일정한 예산을 배정받고 있고, 국세청 내 양육비 이행관리 업무의 직원 수는 약 500여명임
- 양육부모가 양육비 신청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산정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추심하여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
- 국세청은 양육비 산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양육부모에게 선(先)지급이 아닌 후(後)지급을 하고 있음

<양육비 이행관리 업무에 대한 뉴질랜드 국민들의 정서>

○ 국세청(IRD)에서 양육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 양육비는 정부에서 받는 세금이 아닌데 왜 국세청에서 개인 간의 문제인 양육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몇 년 전 국세청(IRD)에서 「양육비 전담 기구(CSA)」로 독립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비양육부모에 대한 소득정보 조회, 수색, 압류 등의 권한이 사라지게 되므로 독립노력을 철회함

<양육비 이행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뉴질랜드의 양육비 산정 방식(Formula)은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기존 제도가 복잡해서 최근에 개정을 하게 되었음
- 대부분의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가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양육부모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비양육부모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저마다 불만이라고 함
-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은

그 합의금액이 국세청(IRD)의 산정 방식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조사하고, 금액 산정이 부당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재산정하게 됨

- 한편, 양육비 지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양육부모가 장기간 감옥에 수감되거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면제 받을 수 있음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 비양육부모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 소개를 부탁드린다

- 만약,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IRD)은 비양육부모에게 문자·전화·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비양육부모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회해서 추심을 함. 이 때 압류금지 채권 등은 없음
- 「예금압류」의 경우 국세청에서 은행에 통지 후 즉시 추심하게 되고, 비양육부모에게는 이에 대한 서류의 사본만을 교부함
- 또한, 비양육부모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국세청이 그 사업권을 뺏어서 진행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부서와의 출입국정보 공유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 전 체포도 가능하며, 전자발찌 착용까지 실시할 수 있음
- 만약, 비양육부모의 채무가 많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이 비양육부모에 관한 파산신청을 하여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채무'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시킴으로서 양육비 지급 여건을 마련해 줌
- 또한, 국세청의 변호사는 경찰과 동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뉴질랜드의 경우 검찰청이 따로 없으며, 경찰 및 국세청 등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양육비 관련 법률에 의거 최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기소할 수 있는데, 다만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불이행과는 별개로 탈세 등의 사실이 있다면 양육비가 아닌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등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양육비 지원팀의 권한은 일반 세금을 체납하는 부서의 권한

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양육비 채무자는 미지급 양육비와 별도로 과태료(Penalty) 부과를 당하며 이 과태료 징수금액은 국세청의 일반 예산으로 편입됨

<한국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조언>

○ 한국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조언을 한다면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은 불가능하며 다만 양육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함
-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한도 내에서 적절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산정 및 이행강제)해 주는 것이 중요함

3 웰링턴 고등법원(Wellington High Court)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5. 27.(금), 10:00 ~ 12:00
○ 면담자
- Jane Penney (Court Manager and Registrar, High Court of New Zealand)
○ 장 소 : 2 Molesworth Street, Wellington

□ 주요 질의·답변사항

<뉴질랜드 고등법원의 양육비 사건에 관한 역할>

○ 고등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현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림
-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항소로 처리하는 사건은 많지 않고, 별도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 상위 법원임)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배심제에 관하여>

○ 뉴질랜드 형사사건의 배심원제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림

- 뉴질랜드는 재판의 결과가 한국과 달리 판사가 아닌 배심원의 결정에 기속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선정된 배심원은 합리적 사유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Penalty)를 부과 받음

④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가정)법원(Wellington District(Family) Court)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5. 27.(금), 13:00 ~ 17:00

○ 면담자

- June Johnston (Judge, Wellington District Court)
- Tony Walsh (Judge, Wellington District Court)
- Pat Grace (Judge, Wellington District Court)
- John Delany (Barrister(local lawyer), Terrace Chambers)
- Roz Fraser (Court Manager, Wellington District Court)

○ 장 소 : 43-49 Ballance Street, Wellington

□ 주요 질의·답변사항

<뉴질랜드의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에 관하여>

○ 가사사건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림

- 웰링턴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사건의 부·모의 변호사 이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호사(Independent Children's Lawyer)」가 별도로 존재함. 웰링턴에는 약 20여명의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가 활동 중임
-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는 판사를 대신해 자녀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판사에게 보고하여 판결에 영향력을 주고 있음

<뉴질랜드의 양육비 산정 및 이행강제 절차 안내>

○ 뉴질랜드의 양육비 산정과 이행강제 절차 등에 안내를 요청드림

-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2015년에 양육비 산정방식(Formula)을 개정하였는데 그 계산방식이 복잡해서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법원에 있는 판사들 또한 그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위 국세청에서 위 양육비 산정방식을 개정 할 때 관련기관인 법원이나 민간 변호사들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서 양육비 사건을 다루는 법조 실무자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부·모가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됨
- 한편,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Penalty)가 부과되는데, 그러고도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 과태료는 계속 증가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국외로 출국하여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음
- 따라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함

<뉴질랜드 지방법원의 양육비 사건에 관한 역할>

○ 당사자들의 양육비 합의 후 법원이 아닌 '변호사'가 (공증 등) 구속력 있는 서류를 도와 줄 수 있는지

-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의한 경우는 재벌들이 많고, 일반적으로는 국세청(IRD)에 양육비 산정을 신청하라고 권유함
- 이미 양육부모가 「가사수당(DPB)」을 받고 있다면,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한 양육비 금액은 의미가 없고, 반드시 국세청의 양육비 산정방식(Formula)에 따라야 됨
- 단, 당사자들이 정한 양육비 금액이 국세청의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같거나 초과되면 무방함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에 관하여>

○ 뉴질랜드는 양육비 이행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 우선, 토착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가정적인 면이 강하고, 국가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중요하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임

○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가정법원 판사들이 가사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 "자녀(Children)"임. 비록 부모는 이혼을 했지만, 자녀는 잘 성장해야 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Ⅲ 호주(Australia)

1. 호주의 양육비 이행제도

1 제도 개요

(1) 제도 현황

○ 호주에서는 1988년까지 「법원에의 등록(Registration)」과 「법원 명령을 통한 추심」으로 양육비이행을 관리하였고, 1989년 양육비 산정식(Formula Assessment)을 제정하여 1998년까지는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이 양육비 정책을,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 Support Agency)이 양육비이행의 실제를 담당하여 왔음. 그 후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은 Medicare(의료복지) 및 Centrelink(복지수당)과 함께 DHS로 통합되었음. 현재까지 DSS(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양육비 관련 법 제정 및 정책 입안을, **DHS(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양육비이행관리의 실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CSA : DHS(복지부)에 속해 있음]은 자녀양육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양육비 채권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모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관할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급이행율을 높이고,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양육비 이행지원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양육비산정식이 법원에서 제공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호주에서는 사회복지부(DSS, 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 양육비 산정식(Formula)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복지부(DHS)를 통하여 개인이

직접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②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 Support Agency, CSA)의 기능과 역할 - 호주 복지부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소속

(1) 조직

가) 기관의 역할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 근거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정하고 징수하여 양육자에게 전달하며, 양육비의 재(再)산정 및 면제 등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이행

○ 양육비 징수에 있어서 임금·각종 수당·예금·세금환급금 기타재산으로부터 직접 징수 등을 포함한 강제적 법적 권한 행사 가능

나) 기관의 현황

○ 양육비 이행관리를 위한 직원 수는 총 2,900여명임

○ 양육비 이행 담당자(Child Support Registrar)는 현재 Mr Bill Volkers이며, Child Support Smart Centre의 관리책임자(General Manager)이자 일종의 CEO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원들은 양육비 이행 담당자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함

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

○ (사회복지부, 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사회복지부에서 마련한 양육비 이행 정책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실행함
- DHS와 DSS간에 가족 복지 및 양육비 이행 관리를 위한 쌍방 관리 협정(Bilateral management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체결된 협정은 2014. 10.임

○ (국세청,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 국세청의 직장(급여)·세금(재산) 등의 전산망을 공유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세금환급금 등을 추심함

○ (이민국, the Australian immigration office)

- 이민국에 양육비채무자에 관한 출국금지요청(Departure Prohibition Orders : DPOs)을 하여 양육비를 추심함

○ (가정법원, the Family Court)

- 자녀 양육비 산정 문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또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조정을 담당함

라) 2015년도 양육비 징수 및 전달 관련 주요 통계

○ 2014-2015 2년간 약 80만 건의 양육비 신청사건에 관하여 120만명의 자녀를 위하여 35억 호주달러(3.5 billion; 약 한화 2조 9,750억 원)의 양육비를 징수하여 양육 부모에게 전달함

(2) 주요 업무

가) 자녀 양육비 산정 및 이행 절차

○ 양쪽 부모가 자발적 합의에 도달한 경우

- 양쪽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관련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자발적 합의내역을 DHS에 등록 하고, DHS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전달 받을 수 있음
- 단, 사적인 양육비 합의 금액이 양육비 산정식(Child Support Formula)의 양육비 산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되며 복지부(DHS)의 양육비 산정식에 의하여 다시 양육비 금액이 산정됨

○ DHS의 양육비 산정식(Child Support Formula)

- 양육비 산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함

1. 자녀양육비용(the Cost of Children : 일종의 고정된 양육비 표)
2. 부모의 수입(income percentage)

3. 돌봄의 정도(Levels of Care) 및 비율(the Care Percentage)

-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를 많이 내야 함
-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수만큼 양육비를 감액함
- 부모들이 자녀를 각각 얼마나 돌보는지 복지부(DHS)에 정보를 제공하며, 돌봄의 정도 및 일수는 변경 가능함

○ DHS의 양육비 산정평가(Formula Assessment)

- 양쪽 부모가 자발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 이혼한 부모 어느 쪽이라도 양육비 산정평가(Formula Assessment)를 DHS에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매년 지불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여 월별 지급 금액을 나누어 양육비 채무자 및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보함

○ DHS의 양육비 계산방법

- (1단계) 양육비 소득(Child Support Income) 산정

※ ① 양 부모의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산정
② 위 조정과세소득에서 최저생활비(self support amount)를 감액
③ = ① - ② 로 양 부모의 각자의 양육비 소득이 산정됨

- (2단계) 각 부모의 양육비 소득((Child Support Income)을 합산함

- (3단계) 양쪽의 양육비 소득 비율(income percentage)을 계산함

- (4단계) 자녀 돌봄 비율(care percentage)을 계산함

- (5단계) 위 자녀 돌봄 비율에 따라 자녀 돌봄 비용(care percentage)을 계산함

- (6단계) 위 양육비 소득 비율 및 자녀 돌봄 비용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및 양육비 지급비율(child support percentage)이 결정됨

- (7단계) 고정된 자녀양육비용(costs of children) 표에 따라 자녀양육비용을 계산함
- (8단계) 지급가능한 양육비를 산정함(고정된 자녀양육비용 × 양육비 지급비율)

○ DHS의 양육비 산정평가에 관한 이의제기(Objections)
- 위 양육비 산정에 관하여 부모 일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①서면으로, ② 결정 고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③ 90일 이상 거주한 관할 양육비이행관리지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가 있는 부모 일방은 행정항소법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 전통적인 의미의 법원이라기보다는 '위원회') 또는 법원에 추가 이의(Appeals)를 제기할 수 있음
- 주로 AAT를 통한 양육비 재(再)검토가 이루어짐
- 재검토(Review) 결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의가 받아들여져 양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DHS의 양육비 재(再)산정
- 복지부는 국세청(ATO)에서 매년 업데이트한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부모의 소득금액이 변경을 사유로 한 양육비 재(再)산정을 하며, 특별한 사정 발생 시에도 부모 일방의 양육비 재산정 요청에 따라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여 산정함
- 마찬가지로 양육비 재(再)산정에 관하여 행정항소법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 전통적인 의미의 법원이라기보다는 '위원회')을 통하여 양육비 산정의 재검토 가능함

○ 법원의 양육비 판결과 DHS의 양육비 산정평가(Formula Assessment)와의 관계
- 법원 또한 원칙적으로 복지부의 양육비 산정식(Formula)로 양육비를 계산하나, 산정식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판결이나 조정은 가능함
- 단,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이 있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복지부(양육비이행관리원)로부터 양육비 산정증명(Formula Certificate)을 받으면

그 양육비 산정증명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로 효력이 있음

- 18세 이상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비양육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이혼 시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양육비를 결정하게 됨

다) 복지수당지급과 양육비 이행관리업무의 관계

○ 양육비 선추심·후지급 원칙

- 양육부모는 「가족세금수당 A(Family Tax Benefit Part A: 일정한 소득 이하이며 최소 35%의 비율 이상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 그 '자녀'에 관하여 지급)」와 「가족세금수당 B(Family Tax Benefit Part B: 일정한 소득 이하이며 최소 35% 이상 자녀 양육을 하는 '가정'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그 외에도, 자녀를 위하여 「자녀 돌봄 수당(Paid Parental Leave scheme :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의 일종의 양육보조수당)」등 여러 가지 복지 급여가 있음
- 단, 위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u>호주의 경우 양육비 추심이 완료된 이후에야 양육비를 양육부모에게 전달하고 있어, 이는 호주의 양육비 이행관리 및 추심이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음</u>

○ 최소양육비 지급의무

- 비양육부모가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복지수당을 받으면,
  2주에 최소 10 호주 달러는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함

라)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 출국 금지 조치(Departure Prohibition Orders : DPOs)

- 복지부(DHS)가 직접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민국

(Australian Immigration Office)에 요청하면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짐
- 양육비 채무자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이 금지됨
- 외국 거주자의 경우 출국이 금지되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호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수도 있음
- '출국 금지에 관한 이의(Apeal)'를 연방 순회 법원(Federal Circuit Court)에 할 수는 있음
- 출국하고자 하는 양육비 채무자는 복지부(DHS)와 합의를 거쳐서 건강 목적·가족중대사가 있을 경우 「출국허가증명(Departure Authority Certification)」이 발급되어 출국이 가능하나, 보증금 또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 출국 금지로 인하여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나, 외국인의 경우 비자 만료시 강제수용소(Detention Centre)에 수용될 수 있음

○ '급여'에서 양육비 공제(Employer Withholding)
- DHS(복지부)가 바로 양육비 추심이 가능함

○ '제3자'로부터 양육비 추심(Collecting through third parties)
- DHS(복지부)가 바로 추심이 가능하며 은행 예금 압류 등이 포함됨

○ '세금환급금 가로채기(Intercepting Tax Refunds)'
- DHS(복지부)가 바로 추심이 가능하며, 국세청(ATO)이 Child Support Registrar에게 추심을 권고함

○ '사회복지수당 감액 지급(Deductions from Social Security Payments)'
- 복지부(DHS)에 Centrelink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지부(DHS)가 직접 감액 지급

○ 소득 축소 조사 (Income Minimisation Investigation)
- 일방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지를 조사

○ 소송 (Litigation) 및 기소(Prosecution)

3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기능과 역할

(1) 조직

가) 기관의 역할

○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호주 '국세청'이 양육비 이행관리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사회복지 재정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부'가 양육비 이행관리 개정 법률안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양육비산정식(Formula)의 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로부터 양육비 이행관리 정책을 포함한 호주 복지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한 질의(Review, 2015. 2. 15.)에 관하여 사회복지부가 답변 및 정책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기관의 규모

○ 사회복지부의 총 직원 수는 약 2,500명이며 양육비(Child Support) 정책만을 담당하는 팀은 8명으로 구성됨

다) 양육비이행관련법안 소개

○ 양육비이행 관련 법안은 다음 2가지가 있음

- 양육비 등록 및 추심법(Registration and Collection Act, 1988년 제정)
- 양육비계산법(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년 제정)

(2) 주요 업무

가) 양육비 산정식(Formula) 개정

- 최근의 양육비 산정식(formula) 개정은 2006~2008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최종 개정은 2008년에 있었음
- DSS 소속 공무원들이 법률·복지·통계·아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12인의 개정위원회를 보조하나, 개정 내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음

나) 주변국들과의 연계

○ 외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

-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미국 등 외국정부와 양육비이행 및 추심에 관한 협정(Agreement)을 맺고 있음
- 호주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부양료·양육비에 관한 협정(Child and Spousal Maintenance)을 맺었고, 위 협정을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 개인이 아닌 호주·뉴질랜드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여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도 상당함

※ 호주에서 외국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

구분	**뉴질랜드 (정부펀드)**	**뉴질랜드 (양육비채무자)**	영국	미국	캐나다	기타국가
비율(%)	**27**	**52**	4	4	2	11

※ 외국에서 호주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

구분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기타국가
비율(%)	**22**	9	6	1	62

○ 양육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체결

- 호주정부는 1973년에 「부양의무에 관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 협약 (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Relating to Maintenance Obligations)」에 가입하였음

  ※ 대한민국의 경우 2012. 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서로 다른 국적의 부모가 이혼 시 자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자녀 복리를 위하여 원래 있었던 국가로 돌려보내는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부양의무에 관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바 추후 협약 가입이 필요함

- 또한, 「UN의 외국으로부터의 생활비 회복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very Abroad of Maintenance)」에도 가입하고 있음

○ 위 협정 체결 및 협약 가입 등을 포함하여 총 97개국과 양육비 이행·추심을 위한 연계 진행 중임

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

○ (복지부,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SS에서 마련한 양육비 이행 정책을 DHS가 실행함
- 호주정부의 양육비를 포함한 호주 복지 시스템에 관한 2015. 2. 15.자 보고서 질의(Review)에 관한 답변·양육비산정식 변경·양육비 정책 입안 시에 실무기관인 복지부와 면밀히 협력함
- 단, 양육비 정책 변경은 DHS에서 불가하며 DSS만이 가능함

4 가정법원(family court)의 기능과 역할

(1) 조직

가) 기관의 역할

○ 호주의 양육비 관련 사건은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 관할하기보다는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음
○ 호주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은 양육비이행기구(DHS)의 양육비 산정결과에 대한 AAT(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행정항소법원)에의 이의제기(Objections)에도 불구, 재불복하여 항소(apeal)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산정 절차에 개입함
○ 호주 가정법원(Family Court)의 경우 좀 더 복잡한 가사사건(이혼 등)에 관하여 다루며, 이혼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 산정이 가능

나) 기관의 규모

○ Family Court of New South Wales의 경우
호주 순회법원에 4명의 판사, 가정법원에 2명의 판사가 각 재직함
○ 가정법원에는 판사 외에도 심리학자 등 Social Worker 및 Family Consultant 등의 법원 직원이 근무하며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접촉함

○ New South Wales 가정법원은 법적 약자들(이혼부모·원주민 등 개인 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정법원과 별개의 기관인 Legal Aid(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구조기구)의 상주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에 방문한 원고와 피고들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음

(2) 가정법원의 주요 업무

가) 이혼사건 등 일반 가사사건 담당

○ 이혼으로 재산분할 등을 하는 경우 양육비를 복지부(DHS)의 양육비 산정식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

○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복지부(DHS)의 양육비 산정식보다 낮고, 양육부모가 복지부(DHS)에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됨

나) 독립 자녀 변호사(Independent Children's Lawer)

-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독립적인 자녀 변호사가 자녀 고유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됨
- 독립 자녀 변호사는 아이(Children)가 관련된 모든 사건에 선임됨
- 독립 자녀 변호사는 아이를 면담하고 관찰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며, 아이의 의견을 고려하나 아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자 지정 등의 의견을 수립함
- 한편, 15~16세의 자녀의 경우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비양육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가능함

다) 자녀 관찰실 및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

- 호주 가정법원은 사건당사자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사사건으로 인한 자녀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벽화 및 식물·동물 등을 법원에 비치하여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함

- 자녀 관찰실 입실시 부모는 심리학자나 Family Consultant 등이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자녀는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입실함
- 자녀는 법정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독립 자녀 변호사가 자녀를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함.
- 부모가 재판받는 동안 자녀가 대기하는 보육시설이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양육자가 1명당 약 10명의 어린이를 보살핌. 보육시설은 자녀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하여 밝은 분위기이고, 텔레비전, 장난감, 소파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실제 양육시설에서 대기중인 자녀들의 표정은 화난 표정·어두운 표정이었음

5 면접교섭센터(Relationship Australia)의 기능과 역할

(1) 조직

가) 기관의 역할

○ 호주에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총 73개의 면접교섭센터가 있으며, Relationship Australia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비영리 단체 중 하나임

○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호주면접교섭협회(Australian Children's Contact Service Association)'를 구성하였고,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표준 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 Relationship Australia는 면접교섭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상담, 가족의 갈등 조정, 가정폭력방지, 노년기 가족 상담 등 다양한 가족 상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나) 조직의 구성

○ (센터 구성)

- Relationship Australia는 호주 New South Wales(NSW)주에 총 4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음

※ Penrith, Blacktown, Hunter, Central Coast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국외연수단이 방문

한 곳은 Penrith 센터임

○ (인력 구성)
- Relationship Australia의 Penrith 센터에는 2명의 정규직과 6명의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8명이 근무
- 직위는 「상담원(family consultant)」에서 시작하여, 중재를 담당하는 「관리자 상담원(mediator)」, 「최종 관리자(senior mediator)」의 3개의 직위로 이루어짐
- 근무자는 전공과 무관하나 보통 아동발달학(child development), 사회복지학(social work), 심리학(psychology) 전공자가 많음
- 주당 37.5시간을 근무하며, 최소 3일 이상 근무하되 근무 시간 조정이 자유로움

2. 호주 기관 방문 활동

1 호주 한인변호사회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5. 29.(일), 12:00 ~ 13:00
○ 면담자
- 홍경일(Ken Hong) 변호사 (Hayashi & Hong)
- 한지희(Jenny Han) 변호사 (Hayashi & Hong)
- 이현주(Hyunjoo Lee) 조정전문가 [Australian Human Right Commission(호주연방 인권위원회)]
- Richard Lee (Barrister, Wentworth Chambers)

○ 장 소 : 1-7 Albion Pl, Sydney

□ 주요 질의·답변사항

<호주의 양육비이행관리 기관에 관하여>

○ 호주 양육비이행기관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요청드림
- 호주의 양육비이행기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약칭 DHS) 내의 Child Support Agency (약칭 CSA)]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CSA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방식(Formula) 표가 정해져 있음
- 만약 양육부모가 산정된 양육비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음
- 호주 또한 뉴질랜드의 결혼 풍토와 유사하고, 호주는 1년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법률혼 효과가 있고, 이혼도 1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이 가능함

<호주의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 관하여>

○ 호주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고충 사항은 어떠한지
- 호주의 비양육부모들은 자신의 소득에 맞지 않는 양육비가 산정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주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Australia)에 불만(Complain)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음

2 호주 양육비이행기관(Department of Human Service)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5. 30.(월), 14:00 ~ 17:00

○ 면담자
- Mr George Thiveos (General Manager, Families Division)
- Ms Amanda Cenin
  (National Manager, Families and Child Support Policy Branch)
- Mr Bruce Young (National Manager, Child Support Smart Centres)
- Ms Peta Mudge

(Assistant Director, Ministerial Coordination and Parliamentary Branch)
- Ms Lauren Moorhouse
(International Delegations Officer, Ministerial Coordination and Parliamentary Branch)

○ 장 소 : the Caroline Chisholm Centre, Canberra 57 Athllon Drive, Greenway, ACT 2900

□ 주요 질의·답변사항

<호주 DHS의 전반적인 소개>

○ 복지부(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약칭 DHS)의 소개를 요청드림
- 호주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은 1988년에 설립되었음.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최근까지 약 800,000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5억 호주달러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됨
- 복지부(DHS)는 3개의 기관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부처로 Medicare (의료복지 담당), CentreLink(복지수당 담당) 및 Child Support (양육비관리 담당)으로 구성됨
- 복지부의 서비스는 대부분의 호주 국민, 특히 노인·장애인·학생·농어촌 지역 주민·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그 종사자 수가 약 36,000여명임
- 복지부는 약 80여개의 타 부처와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하며 이민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
-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은 이혼한 가정에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의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음
- 복지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및 대화나 전화연결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수당(Benefit)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또한,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전화상담을 원하는 이용자가 상담지연에 따라 상담을 못 하게 되어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몇 분 후 연락을 하고, 방문상담 시 담당자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다른 담당자를 주선해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그 밖에 14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당사자들의 기본정보 수집 및 CSA의 홍보에 관하여>

○ 복지부(DHS)}에서는 당사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 복지부는 우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요청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Child Support Agency)에 관한 기본적인 홍보는 언론(Media)을 통해 정보를 확산시키는데, 텔레비전 뉴스·라디오 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출생 자녀에 관한 정보는 자녀 출산 시에 병원 및 산파(조산원) 등을 통해 산모에게 제공되는 출산 축하 선물 상자에 자녀의 Medicare (의료복지) 등록에 관한 신청서가 들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녀의 정보를 수집함

○ 복지부의 서비스 내용을 대다수의 국민이 알게 하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외에 Centrelink(각종 수당지급)·Medicare (의료복지)와 관련하여 복지부(DHS)를 인식하게 됨

○ 그렇다면, 위와 관련된 홍보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 라디오·트위터·페이스북 이외에는 무료인 것은 없음. 단,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복지부를 많이 초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한 가정 당 약 720불의 「가사수당」을 지급하

고 있는데, 자녀에게 필수적인 예방주사를 접종시키지 않으면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예방주사를 접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켰음

<한국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위한 조언>

○ 한국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에 출범을 하였는데 조언을 해 준다면

-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호주 복지부는 자녀가 태어나는 병원에서부터 자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호주의 정서 및 가사수당에 관하여>

○ 한국의 미혼모들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떠한지

-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는데, 호주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음

○ 「호주의 가사수당」에 대해 안내 부탁드림

- 첫째, 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둘째, 각 자녀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별도로 존재함
- 수당의 액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조회를 통해 소득이 많은 가정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호주 사회복지부(DSS) 및 국세청(ATO)과의 업무연계에 관하여>

○ 복지부(DHS)와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약칭 ATO)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 국세청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 국세청은 당사자들의 정보를 조회를 해 볼 수 있으며, 복지부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공유(共有)하고 있음

○ 호주의 양육비산정기준표(Formula)는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는지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사회복지부(DSS)에서 만들어 관리 운영 중임. 복지부는 위 기준표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 하고 있지만,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양육비 산정에 만족하지 못함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약 28년 전 제정하여 현재까지 약 5회 개정되었고, 가장 최신에 개정하게 된 것은 2008년임
- 복지부(DHS) 내에 속해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을 복지부가 관리하며 예산집행 등에 관여함
- 복지부(DHS)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약칭 DSS)와 합동해서 양육비 업무를 지원하지만, 그 업무는 명확히 구분됨
- 사회복지부(DSS)가 양육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수립한다면, 복지부(DHS)는 수립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체적인 양육비이행관리 업무에 관하여>

○ 양육비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달라
-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신청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18세이하' 여야 하고, 자녀와 비양육부모간의 법적인 연결이 있어서는 안 됨
- 그 후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면 부·모가 양육비를 분담하게 되는데, 부·모의 소득 및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고,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양육부모보다 많은 경우에는 양육부모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해짐
- 양육부모가 추가적인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여 추가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위와 같은 결정전에는 부·모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결정사항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후, 대부분의 비양육부모는 그 문서에 서명을 함
- 복지부는 양육비산정시 가급적이면 부·모에게 공평하게 분담시키려고 하며, 이 때 부·모의 최저생활비는 제외하고 계산하게 됨
- 복지부는 부모 중 일방의 양육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이를 중요한 절차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육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

문임

- 복지부는 매년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얼마였는지를 조사하고, 가장 최근의 소득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양육부모는 양육비 산정 후에도 언제든지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양육비가 예전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 양육부모의 변경 요청을 복지부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면 양육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반대로,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런 사유로 새로운 양육비 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신고와 실제금액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실제 소득으로 양육비를 산정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또, 다른 경우는 자녀가 양육부모의 지위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육비율을 정해 그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도 있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및 호주 법원과의 업무연계>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을 소개해 달라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비양육부모의 급여·지급될 연금 또는 사회보장급여· 가족 세금 혜택(Family Tax Benefit) 등에서 공제하는 추심이 가능함
- 뉴질랜드와는 달리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음. 또한, 비양육부모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 등을 통해 추심하기는 곤란함
- 기타 사정에 의해 복지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도 양육비를 결정할 수는 있음
-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부득이 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례로는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넘었지만 장애인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국적이 호주가 아닌 외국인 경우 등이 있음

3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5. 31.(화), 8:30 ~ 11:30

○ 면담자

- Cath Halbert (Group Manager, Payment Policy Group)
- Ty Emerson
  (Branch Manager, Family Payment and Child Support Policy)
- Lauren Nelson (International Relations, DSS Policy Office)
- Chris Bowen (International Relations, DSS Policy Office)

○ 장 소 : Tuggeranong Office Park, Soward Way (Athllon Drive), Greenway ACT 2900

□ 주요 질의·답변사항

<호주 DSS의 전반적인 소개>

○ 사회복지부(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약칭 DSS)의 소개를 요청드림

- 사회복지부(DSS)는 양육비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부(DHS)는 사회복지부가 만든 정책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53%의 양육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한부모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
- 사회복지부(DSS)의 정책 목표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게 합리적인 양육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이고, 양육비 문제로 부모가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정부는 이혼률이 상승함에 따라 양육비 문제를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사회복지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육비 산정', 두 번째는 '이행강제'임

<호주의 양육비이행관리의 구체적 내용>

○ 복지부(DHS)는 양육비 산정을 어떻게 하며, 미지급시 강제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 복지부(DHS)는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양육비가 필요한지를 양육비 산정기준표(Formula)로 계산하고 있고, 위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에 따라 계산되는데, 양육비는 부모가 아닌 양육조부·모에게 지급되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음
- 만약,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불명확한 경우 복지부(DHS)가 비양육부모의 예상 소득을 반영하여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음
- 양육비 지급 방식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주고받을 수 있으며, 복지부(DHS)를 통해 주고 받을 수도 있음
- 또한, 비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양육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기관 등에 지급할 수도 있음
- 호주의 자녀들은 각 자녀마다 수당(Benefit)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얼마냐가 수당의 액수에 반영이 됨
- 만약,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DHS)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급여압류
2. 예금 및 기타 채권의 압류등
3. 세금환급금(Tax Refund) : 비양육부모에게 지급되지 않게 통제 가능
4. 해외출국금지 명령(Departure Prohibition Orders)
5. 수당(보조금) 압류
6. 소득 조회

- 한편, 호주는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뉴질랜드 및 미국 등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호주 내 비양육부모의 출신 국가를 보면 위 뉴질랜드인의 비율은 77%, 미국 및 영국이 각 4%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임(호주에 불법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뉴질랜드임)

○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명의로 양육부·모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복지부(DHS)명의로 지급되는지

-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명의로 양육부·모에게 지급됨
- 양육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일종의 신탁계좌가 있으나, 양육비가 추심되면 지체 없이 양육부·모에게 전달됨

<호주 사회복지부(DSS)와 복지부(DHS)의 연계>

○ 사회복지부(DSS)와 복지부(DHS)의 관계는 어떠한지
- 사회복지부(DSS)와 복지부(DHS)는 대등한 지위의 부처로서, 정책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다만, 정책적인 문제는 오로지 사회복지부(DSS)만이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복지부(DHS)가 변경할 수는 없음
- 복지부(DSS)는 양육비 이외에도 의료급여, 복지급여 등 호주 국민 전반에 관한 재정계획을 담당하고 있음

<양육비산정기준표(Formula) 개정에 관하여>

○ 양육비산정기준표(Formula)의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할 때에는 약 12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 위 기준표에 대한 개정을 논의함
- 사회복지부의 공무원들은 위 개정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지만,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지는 않음
-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시 법률·복지·통계·아동· 전문가들 및 학자들이 관여함
- 또한, 위 개정시 DHS와 충분히 논의하고 DHS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 양육비산정기준표(Formula)에 관한 법원의 입장은
- 양육비이행관리원(DHS 또는 CSA)은 반드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위 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지는 않음

○ 현재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비양육부모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비양육부모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지, 또한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비양육부모들이 자신에게 많은 양육비를 산정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라고 안내함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부(DSS)에서 양육비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 사회복지부(DSS)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업무에 임하고 있음

4 호주 가정법원 (Family Court of Australia)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6. 2.(목), 9:30 ~ 12:30

○ 면담자

- Garry Foster (Justice, Family Court of Australia)
- Hilary Hannam (Justice, Family Court of Australia)
- Sally Cole (Solicitor, Legal Aid New South Wales)
- Jim McCulloch (Solicitor, Legal Aid New South Wales)
- Poul Le Large (Registry Manager Parramatta & Dubbo)
- Mark Palmer (Sernior Family Consultant)

○ 장 소 : Garfield Barwick Building, Commonwealth Law Courts, Parramatta

□ 주요 질의·답변사항

<호주 가정법원의 양육비 사건 업무 개관>

○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육비 사건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림

-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사건을 다루는 숫자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분쟁은 이혼 등 부부간의 갈등에 관한 사건임
- 양육비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판사들이 양육비 사건에서 중

점을 두는 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미래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려 하며,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기 전에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함

- 양육비 사건은 판사·심리학자·사회복지사(Social Worker) 등으로 구성된 3인이 맡아 처리하게 됨
- 또한 자녀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각 부모의 변호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자녀의 변호사(Independent Children's lawyer)가 선임됨

<호주 가정법원의 구성>

○ 호주 가정법원에는 몇 명의 판사가 근무하는지

- 본 법원 건물에는 두 개의 법원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법원(Family Court), 나머지는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정법원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관할하고 가정법원의 판사 수는 2명이고, 순회법원의 판사 수는 4명으로, 위 순회법원에서는 입양·성전환·성폭행 등의 사건을 다루고, 가정법원은 좀 더 복잡한 모든 가사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음

<호주 가정법원의 양육비 사건 처리 절차>

○ 자녀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녀를 법정에 소환하는지

- 자녀가 법원에 오는 경우는 있으나, 거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심리학자가 자녀를 관찰 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다만, 판사의 직권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판사가 판결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지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나, 객관적으로 자녀에게 최선의 복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함
- 자녀 의사 고려 시 자녀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 자녀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 중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됨

-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판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이 위 결정에 판단 요소로 작용함
- 한편, 판사의 판결 선고 후에는 당사자들은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음

○ 양육비 산정 시 양육비산정기준표(Formula)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양육비산정기준표로 양육비를 산정하지는 않음. 호주의 비양육부모들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가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양육비 사건에 대해 법원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종결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법원은 자녀와 부모와의 밀착관계·가정폭력 사건일 경우 부모의 정신상태·외부적 요소·자녀와 부모와 물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함

○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과 경찰이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 사안이 심각할 때에는 당연히 경찰과도 연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계할 일은 많지 않고 판사가 처리함

○ 양육비 이행강제에 관해 안내 부탁드림

- 호주도 예전에는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추심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비양육부모의 급여·세금환급금 등을 징수함
- 정부에서 비양육부모가 무직자인 경우 2주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때 위 수당에서 최소 양육비 10달러를 차감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비양육부모가 무직자나 자영업자인 경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가 쌓이게 되면 법원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함

- 단,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양육비보다는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비양육부모가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양육비를 주고받을 수 있음

○ 양육비이행기관(CSA)에 따르면 법원에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양육비이행관리원(DHS)에서 처리하도록 함
- 법원에서 양육비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는 가령 비양육부모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장래양육비를 예상해서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임
- 호주도 1989년 이전에는 양육비에 대해 법원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이 주도해서 지원하고, 돈(수당)과 관련된 문제는 국세청(ATO)에서 처리함
- 양육비 문제를 법원에서 처리할 때 양육비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결국 비양육부모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이 양육비 업무를 전담한 후로는 비양육부모의 소득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 양육비이행관리원(CSA : 현재 DHS로 통합)에서 처리하게 된 것임
- 이와 같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산정 및 추심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것이며, 호주 법률에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음
- 복지부(DHS)는 매년 달라지는 비양육부모의 소득정보를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음

<호주 복지부의 양육비 이행강제 중 출국금지에 관하여>

○ 양육비 이행강제 중 출국금지에 관한 소개 부탁드림

- 위 복지부의 가장 큰 역할은 추심인데, 급여 및 예금 압류 및 추심·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 그리고, 출국금지임
- 비양육부모는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양육비

지급 또는 일정한 담보(주식 등)를 제공해야만 국외로 출국할 수 있음

- 단, 비양육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현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됨
- 비양육부모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가 건강문제·개인사(급박하고 합리적인 이유) 등의 문제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출국 전 반드시 약속해야 되는 점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임
- 부모의 소득·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부모의 애정·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비율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함

○ 양육비와 관련해 시(市)의 지원을 받아 법률구조(Legal Aid)를 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 법률구조(Legal Aid) 변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당사자가 저소득층인지, 재판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이고 이를 고려하여 위 변호사들이 부모를 대리하고 있음

5 호주 면접교섭센터

□ 면담 개요

○ 일 시 : 2016. 6. 2.(목), 14:00 ~ 17:00

○ 면담자

- Jennifer Moran (Regional Manager, Penrith Centre)
- David Roberts (Senior Manager, Post Separation Service)
- Helen McQuinn (Senior Manager, Post Separation Service)

○ 장 소 : Level 2/ 606 high street, Penrith

□ 주요 질의·답변사항

<면접교섭센터의 전반적 소개>

○ Penrith 면접교섭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
- 면접교섭센터(Relationship Australia, 이하 "면접센터"라고 함)는 호주에서 큰 규모의 해당하는 상담센터이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중재·면접교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력 구성은 상담원·선임 상담원·관리자(Senior)로 구성되어 있음
- 면접센터의 중재는 주로 재산분할(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드니 시내에서 면접센터까지의 접근성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
- 호주 전체의 면접교섭센터의 수는 73개이며, 시드니 시내에도 면접교섭센터가 있고, 이 면접교섭센터들은 연합을 결성하여 자체적인 지침(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개인이 자발적으로 면접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오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 것임
- 면접센터가 위치한 Penrith 지역은 시드니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용률이 높은 편임

<면접교섭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

○ 상담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지
- 면접센터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으나, 상담원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급자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있음

○ 면접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DHS 또는 CSA)과 협력은 하는지
- 면접센터는 양육비이행기관과는 협력하지는 않고, 위 양육비이행기

관을 연결시켜주고는 있음
- 다만, 면접센터는 양육비 증액에 대한 협상은 지원해 주고 있음

○ 면접센터의 일반적인 현황은
- 자녀는 부모가 이혼을 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부모가 이혼 후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음
- 면접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면접교섭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당사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단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소액이며 소득에 따라 달라짐
- 상담사들이 비양육부모와 상담 시 중요한 점은 보안시스템이어서, 각 상담사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비양육부모를 만남. 만약 상담사에게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담사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의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알람"이 울리고, 두 번 누르면 "비상상황"으로 경찰이 면접센터로 출동하게 됨
- 면접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은 약 6개월 ~ 1년 내외지만, 가급적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자발적인 치유를 독려하고 있음
- 만약, 비양육부모가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면접센터는 모든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며 모든 형사사건 처리절차가 끝날 때까지 면접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혀 제공 받을 수 없음
-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면접센터에 처음 오게 되면 첫 시간은 비양육부모와 자녀 상태를 관찰하게 되고, 자녀가 어린이인 경우 1주일에 한 번, 청소년인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방문하게 됨
- 면접센터에서는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에 접촉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음. 예를 들면, 양육부모가 자녀를 면접센터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비양육부모와 싸우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자녀에게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녀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 등이 있기 때문임
- 면접센터의 담당자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간의 모습을 꾸준히 관찰해서 관찰노트를 작성하게 됨. 그 관찰노트는 엄격한 비공개원칙

이나, 형사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의 소환장 발부 요건으로 사용되기도 함

- 자녀가 면접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지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함

○ 면접센터 시니어 중재자로서 중재자의 덕목에 관해 조언해 달라

- 중재자는 공정해야 되고(중립성),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면접센터에서 비양육부모와 자녀간의 1박 2일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

- 캠핑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다만, 비양육부모와 자녀간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비양육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한 대상자만이 참가할 수 있음

Ⅳ 뉴질랜드·호주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제도의 특징

구 분	뉴 질 랜 드	호 주
전담 기구	국세청(Inland Revenue)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내의 양육비이행기구(Child Support Agency)
전담 기구의 강점	국세청이 보유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공정한 양육비 산정평가 및 추심이 가능함	복지부 내의 의료 및 복지수당 지급제도와 함께 '양육비의 징수 및 이체제도'가 필수적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원 신청	국세청에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양육비이행기구에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지원 방식	국세청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구조	양육비이행기구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여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구조
양육비 산정식	국세청에 의해 양육비 산정식이 개발 및 운영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 의해 양육비 산정식 개발 복지부(DHS)에 의해 양육비 산정 평가 절차 운영
조사 권한	국세청이 보유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활용	국세청과 연동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활용
제재 조치	[전담기구의 고유 권한] 미지급 시 범칙금(penalties) 부과 급여 및 연금에서 압류 은행 예금 압류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출국 금지 조치	[전담기구의 고유 권한] 급여 압류 제3자로부터 추심 세금환급금 압류 사회복지수당 감액 출국 금지 조치

□ 뉴질랜드·호주 양육비 이행제도의 공통점

○ 양육비 이행 절차상의 **행정적 기능 강화**

- 뉴질랜드와 호주는 양육비 이행 절차에 있어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에 의한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여, 양육비 관련 소송 등 절차상의 비용을 최소화 하고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양육비 이행에 대한 **국제협약(agreement) 체결**

- 뉴질랜드와 호주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통해 자국 및 타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징수 및 전달 절차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양육비 지급이 양육비 채무자의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뉴질랜드의 국세청 및 호주의 복지부에 의해 양육비 이행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가 형성됨

□ 뉴질랜드 양육비 이행제도의 강점

○ 뉴질랜드 국세청이 양육비 이행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세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정보력 및 이행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음

※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국세청에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국세 체납에 준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 호주 양육비 이행제도의 강점

○ 의료 및 복지수당 지급 제도와의 시너지(synergy) 효과

- 복지부 내의 의료(medicare) 및 복지수당(centralink) 전담기구가 양육비이행전담기구(child support agency)와 함께 통합되어, 양육비의 징수 및 이체제도가 필수적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양육비 이행제도에 대한 홍보 수단) 자녀의 출생 시 예방접종 등의 의료복지 안내와 더불어 양육비 이행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시행하고 있음

2. 제도의 시사점

구 분	우리나라	뉴질랜드 · 호주	문제점
전담 기구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주 정부기관 [국세청 및 복지부]	약한 기관 권한
지원 방식	당사자 간의 직접 지급 방식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이행지원')	양육비이행기구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징수하여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구조	현재 시행중인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은 이행 내역의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사자에게 그 확인을 강제할 수 없음
양육비 산정	법원의 양육비 산정식을 준용	양육비이행기구에 의해 양육비 산정식 개발 및 운영	유사 사안에 다른 양육비 금액 책정 가능, 당사자 간 갈등 소지
조사 권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만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소득·재산·금융> 조회 가능	(뉴질랜드) 국세청이 보유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활용 (호주) 국세청과 연동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활용	법원을 통해 파악 필요하여, 절차 지연 및 비용 발생
제재 조치	실효성이 미흡 (법에는 세금환급금의 압류 및 이체, 체납 자료의 제공 등 제재 조항이 있으나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거나 효과가 적음)	강력한 제재조치 가능 (급여 및 연금에서 압류, 은행 예금 압류,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출국 금지 조치 등)	이행 실효성 담보수단 미흡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산정·양육비 징수 권한 확대

○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주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복지부가 양육비 이행전담기구로서 양육비 징수 및 이체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수행

○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양육비이행기구가 양육비 징수 및 이체를 전담함으로서 양육비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간의 직접 지급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

○ 뉴질랜드와 호주는 양육비 이행절차에 있어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양육비이행기구를 통한 행정적 기능을 강화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이행절차에 있어 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양육비 산정식도 법원에 의해서만 제공이 됨

[주요 시사점]

▶ 원활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 권한 강화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징수 및 이체를 전담하는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 필요

▶ 양육비 산정 및 이행지원제도에 있어 법원의 개입을 축소하고, 정책 입안 및 집행 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동의 없이도 거의 제한 없이 주소·근무지 및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한 뉴질랜드·호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소득·재산 정보는 그 중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조회가 가능함

○ 양육비이행기구의 고유 권한으로서 강력한 제재조치 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호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제재조치 수단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

[주요 시사점]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조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지속

▶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수단을 마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기능 강화

□ 양육비 이행 관련 국제 협약 체결의 필요성

○ 뉴질랜드 및 호주는 양육비 이행 관련 국제 협약 체결을 통해, 양육비의 징수 및 이행 절차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가 도입·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가 안정화기에 들어선 후 양육비 이행 관련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